

1. 개정이유

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정신장애 측정방법에 평가도구 활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,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에 치료방법(수술)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치료방법(수술) 등을 포함하여 점수제로 정함(안 별표 4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)

나. 정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[간편정신평가척도(BPRS), 총괄기능평가척도(GAF)]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별표 4 제4호가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 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4호가목8)에 다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목 가목14)를 15)로 하며, 같은 목에 1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) 장애 점수표

진단기준	점수	치료방법	점수
8개 이상	8	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	2
7개	7	척수신경자극술	2
6개	6	대뇌운동피질자극술	1
		말초신경자극술	1
5개	5	신경과괴술	1
4개	4	각 치료방법 점수를 합산하되, 최대 3점으로 한다	

14) 정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상 제한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신장애 평가도구[간편정신평가척도(BPRS), 총괄기능평가척도(GAF)]를 활용할 수 있다.

별표 4 제4호나목 6급 1항 4113의 장애내용란 3)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 점수표(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

점수를 합한 점수)의 점수가 8점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.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, 단순방사선 검사[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(CT)을 포함한다],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.

별표 4 제4호나목 6급 2항 4114의 장애내용란 7)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)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 점수표(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 점수를 합한 점수)의 점수가 8점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. 이 경우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, 단순방사선 검사[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(CT)을 포함한다],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.

별표 4 제4호나목 7급 4115의 장애내용란 3)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 점수표(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 점수를 합한 점수)의 점수가 6점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.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, 단순방사선 검사[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(CT)을 포함한다],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